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9호 2015. 2. 17(화)

# 포항시보

## ◀ 공 고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을위한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제 2015-1호) 2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5-7호) ..... 3
- 공 인 공 고(제2015-175호) ..... 8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5-11호)..... 9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5-12호) ..... 11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제2015-12호) ..... 14

회 람									
--------	--	--	--	--	--	--	--	--	--

**공 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5 - 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다. 면적 : 기정(3,756,640㎡) 변경(1,404,058㎡) (감)2,352,582㎡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주요내용 (개제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5. 2. 17 ~ 3. 2)
- 나. 열람방법
  - 관계도서 및 도면은 경상북도 투자유치실(053-950-3536), 포항시 일자리창출과(054-270-2393), 포항시 흥해읍사무소(054-240-756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팀(053-550-1842)에서 열람

4. 의견 제출

- 가. 의견접수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2부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15층 (우:701-824)
  - 포항시청 일자리창출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우:790-722)
- 나. 의견 제출 방법 : 공람,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을 열람 후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
- 다. 제출기한 :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우편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포항시 공고 제2015 - 7호

#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필요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함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개정(2015. 1. 6) 내용 반영

### 2. 주요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정액 ⇒ 실비)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1야당)		비 고
	당 초	변 경	
제1호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실 비	
제2호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0,000	실 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3. 관계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4. 조례안 :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3, FAX 270-2080)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2. (생략)</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 6. (생략)</p> <p>7. 제29조제2항중 “<u>안전행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u>”와 동 조제2항중 “<u>안전행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동 조제4항중 “<u>안전행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p> <p>8. (생략)</p>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인사혁신처장 과</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제29조제2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u>”와 같은 조 제2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같은 조 제4항 중 “<u>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p> <p>8. (현행과 같음)</p>

## 【별표 1】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20,000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특별시 70,000, 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0,000

##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포항시공고 제2015 - 175호

###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포 항 시 장



- 1. 등록 사유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제3항에 의한 관급자재 검수
-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2. 10
- 3. 등록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공인 이름	규 격	인 영	비 고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 1.8Cm정방형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5 - 1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2. 9.

포 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 칭 : 대로2류4호선 외 3개 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무궁화신타 대표이사 심형구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비 고
대로2류 4호선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14번지 일원	L=114.5m, B=33m	-당초 2009.3.2 ~ 2014.12.30 - 변경 2009.3.2 ~ 2015.6.30	
중로2류 124호선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11번지 일원	L=60.9m, B=15m	“	
중로3류 123호선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6-14번지 일원	L=59.2m, B=12m	“	
소로2류 403호선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번지 일원	L=126.2m, B=8m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게재 생략)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5 - 1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10일

포항시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53번길 7 외 7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67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21번길 3	20110630	영덕읍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50-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29	20091201	행정구역명(우정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정동으로 명명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138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5-12	20091201	장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1385-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민원로 116번길 21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138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43-2	20091201	영덕 지역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139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왕로 87번길 39	20091201	장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141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로 2	20091201	장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4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로 34	20091201	행정구역명(숙도동)을 이용하여 숙도동으로 명명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48-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로 336	20091201	해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6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덕읍 두마리 9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복신길 900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면복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해원리 2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493-3	20090720	행정구역명(죽장면)을 이용하여 죽장면으로 명명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덕천리 23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0-5	20091201	죽장면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동 157-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동 20-5	20091201	죽장동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동 15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동 20-3	20091201	죽장동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3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죽진리 15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죽진로 77	20091201	행정구역명(죽진리)을 이용하여 죽진리로 명명
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칠포리 51-6, 5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죽해로 1573	20091201	죽해읍 칠포리 죽해로로 이어지는 지방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흥안리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해읍 흥해로 371	20091201	죽해읍 죽해로로 이어지는 지방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5 - 12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10일

포항시 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중섬로 5 외 3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NO	종전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록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1, 93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섬로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섬로 5	2015.02.06	건물군분리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1, 932-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섬로 3	좌동	2015.02.06	관련지번변경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내리 139, 140, 141, 141-2, 14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내리 139, 1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동지길 55-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동지길 55-57	2015.02.06	관련지번변경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내리 139, 140, 141, 141-2, 14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내리 141, 141-2, 14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동지길 55-77	좌동	2015.02.06	관련지번변경